

광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단513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호

피고1. B(B, 변경 전: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2.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D, E, F, G, H

3.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영

4. J

변론 종결2015. 1. 14.

판결 선고2015. 2.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12. 13. 접수 제212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광주광역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3. 23. 접수 제50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I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6. 22. 접수 제120630호 및 2013. 7. 8. 접수 제1416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3. 7. 18. 접수 제149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 사실

원고는 2008. 5. 24.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가, 2009. 2. 4. 출소하였다.

피고 B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원고가 수감 중이던 2009년경 미합중국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슈피어리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K)를 제기하였다. 2009. 7. 30. 선고된 판결(부동산의 표시에 일부 오기가 있어 2010. 6. 21. 경정, 이하 '1차 판결'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 부부 공동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1차 판결에 대한 집행허가의 소(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3675)를 제기하여 강제집행 허가를 받은 후, 2010. 12.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등기가 다음과 같이 마쳐졌다.

제1항 기재 부동산	2011. 3. 21.	소유권이전등기	2011. 3.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피고 광주광역시
------------	--------------	---------	-------------------------	----------

제1항 기재 부동산	2011. 3. 21.	소유권이전등기	2011. 3.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피고 광주광역시
2011. 6. 22.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6. 2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5,500,000원채무자: 피고 B근저당권자: 피고 I 주식회사	
제2항 및 제3항 기재 부동산	2013. 7. 8.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7. 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600,000원채무자: 피고 B근저당권자: 피고 I 주식회사
2013. 7. 18.	소유권이전등기	2013. 5. 23. 매매	피고 J	

한편, 원고는 수감 도중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차 판결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2. 피고 B가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의 송달증명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1차 판결을 취소하였다(이하 '2차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 B는 2차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양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stipulation)에 따라 2013. 10. 15.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이혼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2차 판결을 취소하고, 양 당사자는 1차 판결에 따라 이혼한 상태로 남는다(주문 제2항).

○ 1차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취소한다(주문 제3항).

○ 양 당사자는 해결되지 않은 재산분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관할권은 이 법원에 유보되어 있다(주문 제4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3호증의 1~3, 4호증, 10호증의 1~2, 11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할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이미 타인과 재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혼 이외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2차 판결에 따라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 가) 이 사건 판결의 문맥에 비추어 1차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본래 피고 B의 어머니인 L의 소유로서 2005년경 원고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피고 B가 원하면 언제든지 위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부동산을 피고 B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을가 3호증)도 작성해주었다.

2) 피고 I 주식회사(이하 'I은행'이라고만 한다) 가) 피고 I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한 집행판결에 따라 마쳐진 것이므로, 위 집행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판결도 별도의 집행판결로 승인되어야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문맥에 비추어 1차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에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판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I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 B의 재산분할에 기초하여 마쳐졌으므로,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3) 피고 광주광역시, J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피고 B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하면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청구의 근거가 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관한 집행요건 존부에 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확정된 위 집행판결(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3675)의 기판력은 1차 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하여만

발생하므로, 그 후 1차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판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I은행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1차 판결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가 위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이 사건 판결 주문 제2항은 모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1차 판결을 모두 취소한 2차 판결 중 이혼에 관한 부분만 다시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는 1차 판결에 따라 이혼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주문 제3항은 1차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이혼에 관한 부분과 달리 2차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문 제4항은 해결되지 않은 재산분할 문제에 관하여 다시 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1차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재산분할 부분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국내 재판에서 바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그 외국법상 인정되는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한 '승인'의 문제로서, 승인된 외국법원의 재판을 국내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조의 '집행'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외국법원의 재판은 국내에서 승인되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그 확정과 동시에 판결을 구한 목적이 달성되어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집행판결을 구할 필요 없이 승인된 판결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 재판에는 판결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일체의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기초한 이 사건 판결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

재판에 해당하며, 1차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은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로 하지 않는 형성판결이므로, 승인과 함께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판결 및 그 집행판결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존부

피고 B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한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 및 특유재산 등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부부재산제를 신뢰하고 법률행위를 한 제3자에게 그와 규율을 달리하는 외국의 부부재산제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판결을 취소한 2차 판결 및 2차 판결의 일부를 다시 취소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므로,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피고 I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등기부상 권리자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99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1차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 사실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설령 나머지 피고들이 법률행위 당시 등기명의인이었던 피고 B를 소유자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12. 13. 접수 제212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광주광역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3. 23. 접수 제50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I은행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6. 22. 접수 제120630호 및 2013. 7. 8. 접수 제1416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3. 7. 18. 접수 제149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현

별지